

##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3. 17.

담양군의회 의장



### 1. 조례명 :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2. 제안 이유

- 기업도시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, 낙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개정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법안을 토대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, 담양군 내 기업의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 내용

-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등에 대한 감면

(안 제8조)

-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사항
  - 최초 5년간 ⇒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
  - 그 다음 3년간 ⇒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

4. 입법 예고 기간 : 2026. 3. 17. ~ 3. 22.(5일간)

#### 5. 의견 제출

-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 제출 서식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의견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1. 조례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   |
| 2.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조문                 | 의견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3.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<div>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div> <div>2026년 3월 일</div> <div>의견 제출인 주소</div> <div>(전화 : )</div> <div>성명 (서명 또는 인)</div> <div>담양군의회 의장 귀하</div>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

##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”을 “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감면율”은 100분의 50으”를 “경감률”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,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8조(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<br>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<br>면)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<br>“조례로 정하는 감면율”은 100<br>분의 50으로 한다. | 제8조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<br>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<br>대한 감면) -----<br>----- 경감률”은 재산<br>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<br>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<br>50으로, 그 다음 3년간은 재산<br>세의 100분의 25---- |